

도시계획시설(도로·철도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 목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따라 여의나루역 출입구 이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(도로·철도)결정 및 변경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.

2026년 8월 6일

서울특별시 영 등 포 구 청 장

1. 변경결정사유

- 목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단지 내외로 유입되는 보행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. 이에 따라 여의나루역(5호선)과 재건축 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지하층 연결로를 설치하고, 노후화된 기존 4번 출입구 정비 및 관련 시설(환기구 등)의 이설을 통해 보행 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며, 시민과 입주민 모두의 보행 안전 및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함.
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유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대로	3	31	25~45(28)	주간선 도로	1,380	여의도 남단	여의도 북단	일반도로	-	건고143(70.3.26)	
기정	대로	3	31	25~45(28)	주간선 도로	1,380	여의도 남단	여의도 북단	일반도로	-	건고143(70.3.26)	• 도시철도(여의나루역 정차장) 중복결정

나.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면적(㎡)			연장(m)	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고
			기점	종점	주요경과지				
기정	철도	도시철도(밤섬 정차장)	-	-	영등포구 여의도동 30 일대	-	10,830.0	건설부고시제1991-151호(1991.4.1.)	
변경	철도	도시철도(여의나루 정차장)	-	-	영등포구 여의도동 30 일대	-	11,074.8	건설부고시제1991-151호(1991.4.1.)	• 4번 출입구 및 E/L 이설 - 증) 244.8㎡

나-1. 도시계획시설(철도)입체적 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구분	기정	변경	변경후	최초결정일	비고
신설	철도 (여의나루 정차장)	영등포구 여의도동 30	길이(m)	-	증) 35.8	35.8		
			폭(m)	-	증) 8.1~12.9	8.1~12.9		
			높이(m)	-	증) +4.99~+20.49 (해수면기준)	+4.99~+20.49 (해수면기준)		
			면적(㎡)	-	증) 284.06	284.06		
세부사항	• 입체결정 범위(변경) - 지상부 A= 137.16㎡(증 137.16㎡) / H = 해수면기준(+) 14.5 ~ 20.49m - 지하부 A= 284.06㎡(증 284.06㎡) / H = 해수면기준(+) 4.99 ~ 14.5m							

※ 금회 출입구 이설로 증가되는 면적 : 329.3m²
기존 출입구 폐쇄로 감소되는 면적 : 84.5m²
총 변경 면적 : 413.8m² (증가면적 244.8m²)

나-2.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내용	결정사유
- 지하철 출입구 이설 - 면적 : 10,830.0m² → 11,074.8m² (증 244.8m²)	- 목화아파트 재건축사업 개발에 따른 지하철 이용 수요 급증으로 기존 4번 출입구 일대의 보행 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. - 따라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보행 동선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,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(Barrier-Free)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목화아파트 재건축사업지 내로 4번 출입구를 이설 및 지하연결통로를 신설하여 보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.

3. 관련도면 : 생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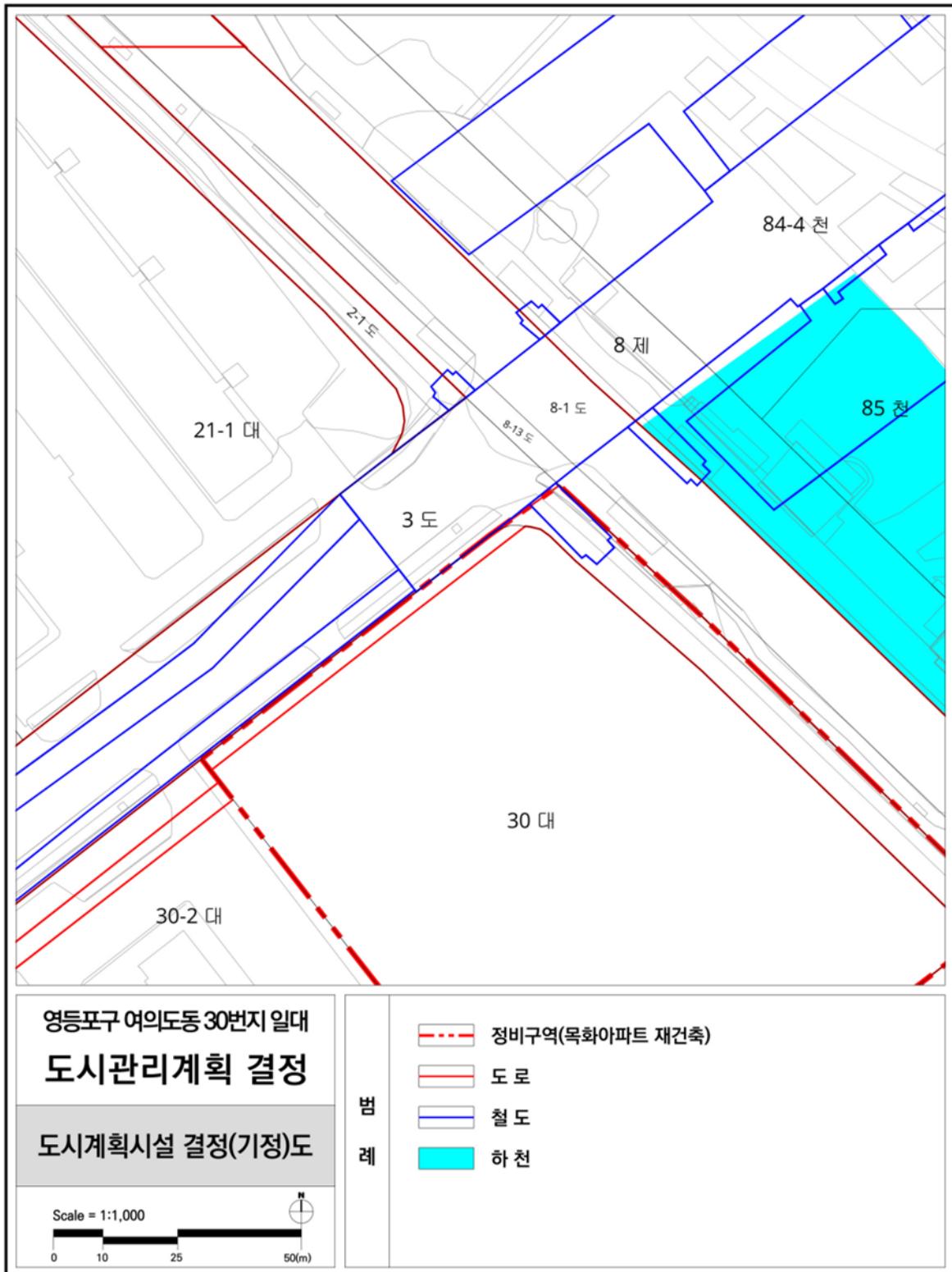
영등포구 재건축사업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

4. 관련서류

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영등포구 재건축사업과(☎ 02-2670-3583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■ 도시계획시설(도로 · 철도) 결정(변경) 지형도면고시도

〈도시계획시설 결정(기정)도〉



〈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〉

